대구지방법원 2024. 11. 19 선고 2024가단822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A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리

담당변호사 도규창

변론 종결2024. 10. 15.

판결 선고2024. 11.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 D, 피고는 2022. 4. 1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차용증

금액: 40,000,000원

상기 금액을 안동 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경북 안동시 E 일원) 사용용도로 정히 사용하며 상환기일은 2022. 10. 30.로 한다.

상환약속을 못지킬시 민형사상 어떠한 조치를 위하여도 이의가 없으며 안동 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 자금 외로 사용할 수 없음을 각서합니다.

2022. 4. 19.

차용인 C

보증인 D

연대보증인 B

A 귀하

나. 원고는 2022. 4. 20. C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22. 6. 30. C 명의 계좌로 18,080,140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수회에 걸쳐 C에게 현금 약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2. 4. 19. C에게 대여할 금액을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피고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C에게 2022. 4. 20. 1차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차로 2022. 6. 30. 체납국세 등 납부를 위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18,080,140원을 송금하였고, 경비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회에 걸쳐 현금 500만 원 정도를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증은 C가 원고로부터 공사비용 2,000만 원을 차용하고, 차후 노인복지시설을 개설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원금 2,000만 원 외에 이자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더하여 4,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원고가 이후 C의 요청으로 대여하였다는 18,080,140원과 500만 원은 이 사건 차용증상 차용금과 별개의 금전거래이므로 피고에게 보증책임이 없다.

3.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C에게 지급한 2,000만 원, 18,080,140원, 500만 원은 모두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에 지급된 것으로,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지급된 금원은 없었던 점, 원고는 C에게 2,000만 원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다음 날인 2022. 4. 20. 송금하였고, 18,080,140원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후 2달 정도 지난 후인 2022. 6. 30. 송금하였으나, 위 두 번째 송금한 날짜인 2022. 6. 30.도 이 사건 차용증상 변제기(2022. 10. 30.)로부터는 4달 이전인 점, 체납국세 납부나 경비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도 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두 번째 송금이 이 사건 차용증 작성 후 2달 정도 지나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차용증과 별개의 금전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은 C가 원고로부터 공사비용 2,000만 원을 차용하고, 차후 노인복지시설을 개설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원금 2,000만 원 외에 이자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더하여 4,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차후 노인복지시설을 개설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이자 명목 2,000만 원을 더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원고가 이자제한법상 처벌규정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훨씬 초과하는 이와 같은 이자 약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1(C 진술서)의 기재는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는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원고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고, 피고는 위 4,000만 원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는 원고가 추후 C에게 실제 대여하는 4,0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이후 원고가 C에게 4,000만 원을 초과한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채무 4,0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희동